2020년 제5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워크숍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와 성인지예·결산 심의에 대한 이해

일시: 2020. 10. 28(수) 14:00~16:30(2.5h)

장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주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여성가족부지정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Jeju Gender Impact Assessmemt Center

2020년 제5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워크숍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와 성인지예 · 결산 심의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사회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5')	■ 참석자 및 인사	
14:05~15:15 (70')	■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의 이해 (강의: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15~15:20 (5')	쉬는 시간	
15:20~16:30 (7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의 지원 현황 및 과제 (강의: 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16:30	■ 폐회	

발표 1

: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의 이해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의 이해

2020. 10. 28.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Ⅰ.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예산제도

Ⅱ. 지방정부의 예산운영 관리체계 및 예산과정

Ⅰ.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예산제도

1.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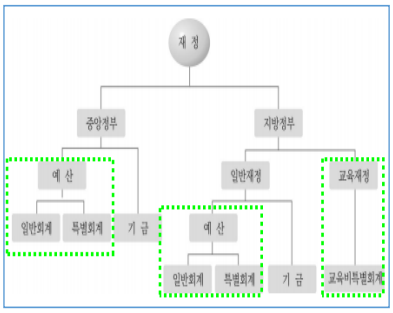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일 반 회 계	4,975,315,689	85.44%	4,493,556,806	85.02%	481,758,883	10.72%
특 별 회 계	847,553,428	14.56%	791,554,591	14.98%	55,998,837	7.07%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7.63%	393,919,820	7.45%	50,269,925	12.76%
기타특별회계	403,363,683	6.93%	397,634,771	7.52%	5,728,912	1.44%

○ 지방재정이란?

지역주민의 공공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재원을 동원·배분·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재정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 2020년 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935,205,828 (637,988,947)	167,757,695 (167,741,395)	950,000 (950,000)	430,000 (430,000)	369,800,000 (192,800,000)	318,818,060 (201,630,901)	74,396,651 (74,396,651)	3,013,422 (0)	40,000 (40,000)

□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설치사유	자치단체 고유의 기능수행(일반회계),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자금 운영 필요시
재원조달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사용자부담, 목적세(특별회계)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 민간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배제(일반회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특별회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	지방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재량범위	목적 외 용도의 정책사업(항)간 이용(移用)시 지방의회 의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없이 가능

□ 2020년 기금 수입계획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원금회수(이자상당)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935,205,828 (637,988,947)	133,180,314 (133,180,314)	45,000,000 (45,000,000)	362,709 (362,709)	47,687,700 (41,404,200)	468,338,742 (357,269,947)	175,300,000 (0)	27,277,519 (22,712,919)	38,658,944 (38,658,944)
통합관리기금	297,216,881	0	0	0	6,283,500	111,068,736	175,300,000	4,564,586	0
지역개발기금	114,327,972	0	45,000,000	0	41,204,200	13,714,228	0	14,409,544	0
재정안정화기금	60,081,706	30,000,000	0	0	0	28,670,344	0	1,411,361	0
재난관리기금	45,394,152	12,703,314	0	0	0	32,613,698	0	77,140	0
재해구호기금	38,114,925	0	0	0	0	38,083,803	0	31,122	0
양성평등기금	1,514,403	0	0	0	0	1,404,895	0	106,508	3,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810,355	0	0	103,678	0	1,508,392	0	76,801	121,484
노인복지기금	1,931,087	500,000	0	0	0	1,352,667	0	78,120	300
장애인복지기금	2,152,463	500,000	0	0	0	1,574,444	0	77,019	1,000
청소년육성기금	2,410,143	500,000	0	0	0	1,827,992	0	82,151	0
식품진흥기금	2,753,812	0	0	259,031	0	2,061,410	0	63,371	37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995,303	463,000	0	0	0	525,003	0	7,30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641,154	3,914,000	0	0	0	1,630,444	0	96,710	0
환경보전기금	2,451,195	0	0	0	0	1,514,687	0	67,508	869,000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428,935	3,400,000	0	0	0	909,393	0	119,542	0
제주관광진흥기금	82,551,729	0	0	0	0	55,388,021	0	614,648	26,549,060
남북교류협력기금	3,371,802	0	0	0	0	3,311,182	0	60,620	0
장애자원공유화기금	6,761,653	0	0	0	0	1,693,171	0	23,482	5,04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70,767,125	26,000,000	0	0	0	43,756,447	0	1,010,678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0,124,290	44,000,000	0	0	0	107,401,942	0	3,722,348	5,000,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6,620,366	3,000,000	0	0	0	13,255,048	0	365,318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58,586	3,000,000	0	0	0	2,821,386	0	137,200	100,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350,600	5,000,000	0	0	0	1,330,600	0	20,000	0
섬도농업인육성기금	1,375,192	200,000	0	0	200,000	920,750	0	54,442	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지방정부의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제도의 도입과정과 기본구조

○ 사업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고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임.

○ 사업예산은 새로운 성과주의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기관임무(비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정책사업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재정시스템임.

○ 사업구조화: 사업예산은 지방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함.

○ 사업은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구조를 형성하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됨.

- 정책사업이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설정의 근거가 됨.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운영 또한 단일 조직 조직(실. 과)내로 한정됨.

-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임. 통상 3~5개의 단위사업들이 하나의 정책사업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임

□ 성과예산서와 사업예산 연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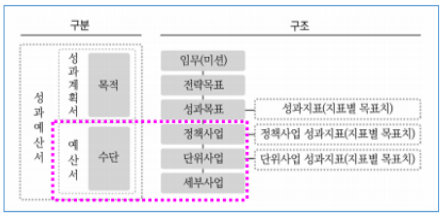

□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세출예산 과목 체계

□ 사업예산편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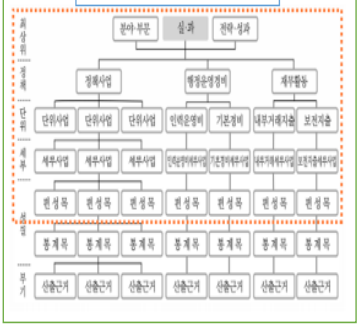

□ 2007년 품목별 예산제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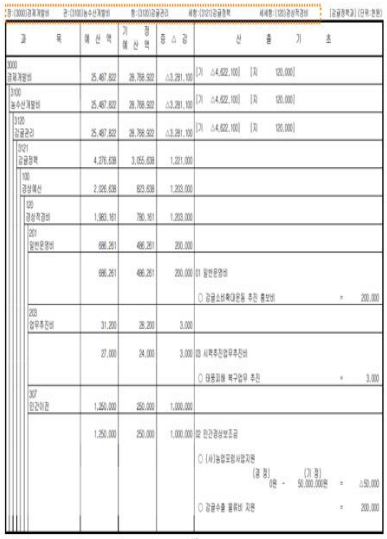

□ 2020년 사업예산제도(예시)

□ 2020년 사업예산제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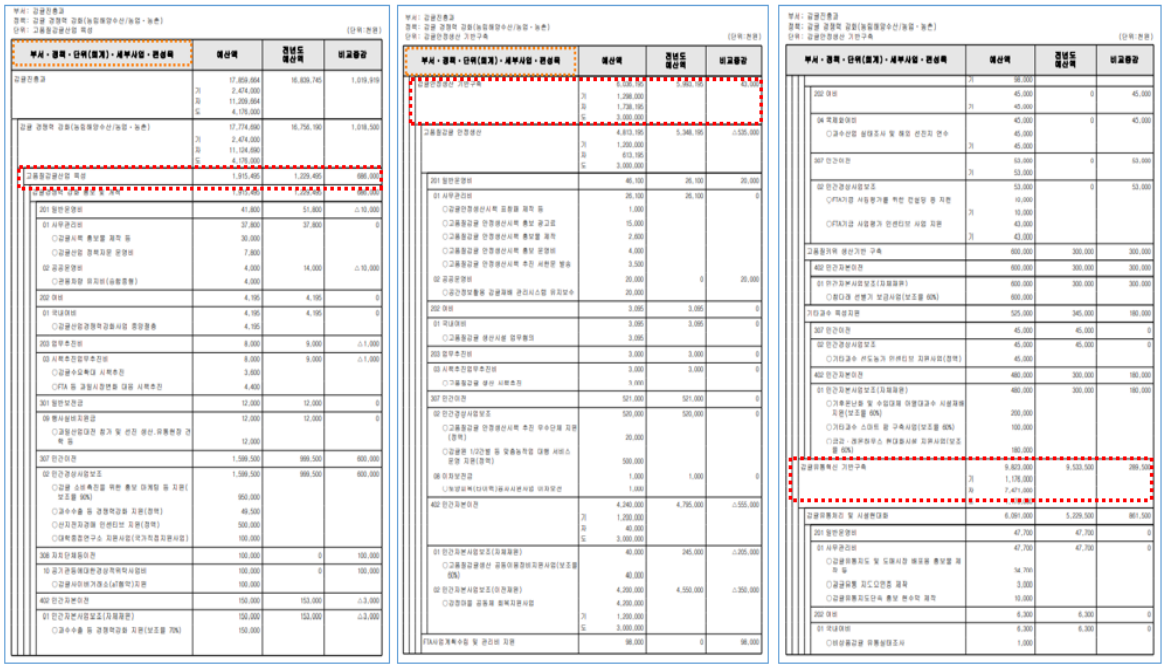

3. 세출예산의 분류

□ 예산의 분류

○ 예산분류란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함. 예산과목의 구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름.

○ 예산과목을 분류하는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인 주민과 예산심의 주체인 의회가 예산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이와 함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예산운용에 대한 통일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있음.

○ 세출예산 과목은 2008년 이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체계였지만,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비목-통계비목'으로 변경

□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89	사회복지일반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90		보건(2)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91	보건의료
	014	재정·금융		093	식품의약안전
	016	일반행정	100		농림해양수산(3)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101	농업·농촌
	023	경찰		102	임업·산촌
	025	재난방위·민방위		103	해양수산·어촌
050		교육(3)	110		산업·중소기업(6)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1	산업금융지원
	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60		문화 및 관광(5)		114	산업진흥·고도화
	061	문화예술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62	관광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63	체육	120		수송 및 교통(5)
	064	문화재		121	도로
	065	문화 및 관광일반		123	도시철도
070		환경보호(6)		124	해양·항만
	071	상하수도·수질		125	항공·공항
	072	폐기물		126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073	대기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74	자연		141	수자원
	075	해양		142	지역 및 도시
	076	환경보호일반		143	산업단지
080		사회복지(8)	150		과학기술(3)
	081	기초생활보장		151	기술개발
	082	취약계층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3	과학기술일반
	085	노인·청소년	160		예비비(1)
	086	노동		161	예비비
	087	보훈			
	088	주택	900		기타

□ 성질별 분류

고통계(3개)	편성목(36개)
100 인건비	101 인건비
200 물건비	201 일반수용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205 유류비, 206 제료비, 207 연구개발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비, 302 이주 및 재배치비용,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5 배상금등, 306 출연금, 307 민간이전, 308 지자체이전이전, 309 공기업경상이전등, 310 국외이전, 311 차입금이자상환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4 공기업자본이전등,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자체금융금변, 602 보차금
700 내부거래	701 자체재정이전등,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재정교부금전출금, 704 예비비, 705 예수금회계간융통, 706 기타내부거래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22,869,117	100.00 %	5,285,111,397	100.00 %	537,757,720	10.17 %
010 일반공공행정	553,950,944	9.51 %	535,594,487	10.13 %	18,356,457	3.43 %
011 입법및선거관리	9,049,441	0.16 %	8,668,510	0.16 %	380,931	4.39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213,850,873	3.67 %	208,544,571	3.95 %	5,306,302	2.54 %
016 일반행정	331,050,630	5.69 %	318,381,406	6.02 %	12,669,224	3.98 %
020 공공질서및안전	184,124,606	3.16 %	169,370,811	3.20 %	14,753,795	8.71 %
023 경찰	3,405,819	0.06 %	2,403,328	0.05 %	1,002,491	40.70 %
025 재난방재·민방위	132,812,380	2.28 %	104,839,858	1.98 %	27,972,522	26.68 %
026 소방	47,846,407	0.82 %	62,067,625	1.17 %	△14,221,218	△22.91 %
050 교육	123,658,496	2.12 %	114,177,836	2.16 %	9,480,660	8.30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99,838,343	1.71 %	99,655,795	1.89 %	182,548	0.18 %
052 고등교육	6,514,242	0.11 %	7,513,786	0.14 %	△999,544	△13.30 %
053 평생·직업교육	17,305,911	0.30 %	7,008,255	0.13 %	10,297,656	146.94 %
060 문화및관광	294,622,124	5.06 %	265,739,271	5.03 %	28,882,853	10.87 %
061 문화예술	122,118,987	2.10 %	121,103,304	2.29 %	1,015,683	0.84 %
062 관광	40,910,977	0.70 %	26,724,585	0.51 %	14,186,392	53.08 %
063 체육	89,021,139	1.53 %	75,106,657	1.42 %	13,914,482	18.53 %
064 문화재	42,571,021	0.73 %	42,804,725	0.81 %	△233,704	△0.55 %
070 환경	717,911,904	12.33 %	690,733,267	13.07 %	27,178,637	3.93 %
071 상하수도·수질	498,236,162	8.56 %	431,713,971	8.17 %	66,522,191	15.41 %
072 폐기물	159,279,340	2.74 %	205,254,177	3.88 %	△45,974,837	△22.40 %
073 대기	5,754,837	0.10 %	2,204,781	0.04 %	3,550,056	161.02 %
074 자연	32,873,380	0.56 %	32,150,327	0.61 %	723,053	2.25 %
075 해양	15,316,575	0.26 %	13,657,511	0.26 %	1,659,064	12.15 %
076 환경보호일반	6,451,610	0.11 %	5,752,500	0.11 %	699,110	12.15 %
080 사회복지	1,265,925,780	21.74 %	1,132,647,529	21.43 %	133,278,251	11.77 %
081 기초생활보장	203,415,072	3.49 %	174,172,573	3.30 %	29,242,499	16.79 %
082 취약계층지원	207,789,665	3.57 %	181,150,862	3.43 %	26,638,803	14.71 %
084 보육·가족및여성	351,650,160	6.04 %	335,555,525	6.35 %	16,094,635	4.80 %
085 노인·청소년	355,904,492	6.11 %	311,914,150	5.90 %	43,990,342	14.10 %
086 노동	63,689,814	1.09 %	42,049,526	0.80 %	21,640,288	51.46 %
087 보훈	15,553,831	0.27 %	12,452,595	0.24 %	3,101,236	24.90 %
088 주택	46,300,056	0.80 %	55,901,466	1.06 %	△9,601,411	△17.18 %
089 사회복지일반	21,622,691	0.37 %	19,450,832	0.37 %	2,171,859	11.17 %
090 보건	69,703,578	1.20 %	65,186,315	1.23 %	4,517,263	6.93 %
091 보건의료	66,245,467	1.14 %	61,831,234	1.17 %	4,414,233	7.14 %
093 식품의약안전	3,458,111	0.06 %	3,355,081	0.06 %	103,030	3.07 %
100 농림해양수산	568,859,055	9.77 %	547,482,061	10.36 %	21,376,994	3.90 %
101 농업·농촌	390,266,868	6.70 %	371,649,650	7.03 %	18,617,218	5.01 %
102 임업·산촌	41,063,942	0.71 %	40,351,555	0.76 %	712,387	1.77 %
103 해양수산·어촌	137,528,245	2.36 %	135,480,856	2.56 %	2,047,389	1.51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1,754,071	6.04 %	216,461,645	4.10 %	135,292,426	62.50 %
113 무역및투자유치	11,173,212	0.19 %	12,022,816	0.23 %	△849,604	△7.07 %
114 산업진흥·고도화	56,711,801	0.97 %	50,882,443	0.96 %	5,829,358	11.46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47,650,663	4.25 %	116,179,991	2.20 %	131,470,672	113.16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6,218,395	0.62 %	37,376,395	0.71 %	△1,158,000	△3.10 %
120 교통및물류	480,867,450	8.26 %	442,213,844	8.37 %	38,653,649	8.74 %
121 도로	133,276,246	2.29 %	123,767,790	2.34 %	9,508,456	7.68 %
124 해운·항만	63,072,572	1.08 %	77,633,910	1.47 %	△14,561,338	△18.76 %
125 항공·공항	1,324,573	0.02 %	1,167,356	0.02 %	157,217	13.47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83,194,099	4.86 %	239,644,785	4.53 %	43,549,314	18.17 %
140 국토및지역개발	462,413,253	7.94 %	359,802,425	6.81 %	102,610,828	28.52 %
142 지역및도시	462,413,253	7.94 %	359,802,425	6.81 %	102,610,828	28.52 %
150 과학기술	1,026,434	0.02 %	713,970	0.01 %	312,464	43.76 %
153 과학기술일반	1,026,434	0.02 %	713,970	0.01 %	312,464	43.76 %
160 예비비	43,925,989	0.75 %	59,899,331	1.13 %	△15,973,342	△26.67 %
161 예비비	43,925,989	0.75 %	59,899,331	1.13 %	△15,973,342	△26.67 %
900 기타	704,125,390	12.09 %	685,088,605	12.96 %	19,036,785	2.78 %
901 기타	704,125,390	12.09 %	685,088,605	12.96 %	19,036,785	2.78 %

(단위: 백만원)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	537,757,720	10.17%
100 인건비	697,279,983	11.97%	660,167,416	12.49 %	37,112,567	5.62%
101 인건비	697,279,983	11.97%	660,167,416	12.49 %	37,112,567	5.62%
101-01 보수	386,782,197	6.64%	375,179,362	7.10 %	11,602,835	3.09%
101-02 기타직보수	37,926,313	0.65%	37,870,736	0.72 %	55,577	0.15%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1,355,807	2.77%	149,528,278	2.83 %	11,827,529	7.91%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215,666	1.91%	97,589,040	1.85 %	13,626,626	13.96%
200 물건비	372,037,255	6.39%	341,474,143	6.46 %	30,563,112	8.95%
201 일반운영비	272,338,240	4.68%	253,876,236	4.80 %	18,462,004	7.27%
201-01 사무관리비	99,597,342	1.71%	94,790,491	1.79 %	4,806,851	5.07%
201-02 공공운영비	138,744,206	2.38%	129,655,197	2.45 %	9,089,009	7.01%
201-03 행사운영비	23,230,422	0.40%	19,660,478	0.37 %	3,569,944	18.16%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66,270	0.18%	9,770,070	0.18 %	996,200	10.20%
202 여비	17,312,482	0.30%	17,064,377	0.32 %	248,105	1.45%
202-01 국내여비	8,583,868	0.15%	8,549,575	0.16 %	34,293	0.40%
202-02 월액여비	3,252,600	0.06%	3,144,000	0.06 %	108,600	3.45%
202-03 국외업무여비	1,319,400	0.02%	1,367,500	0.03 %	△48,100	△3.52%
202-04 국제화여비	2,382,900	0.04%	2,171,300	0.04 %	211,600	9.75%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1,773,714	0.03%	1,832,002	0.03 %	△58,288	△3.18%
203 업무추진비	5,192,526	0.09%	4,957,299	0.09 %	235,227	4.75%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71,136	0.02%	1,153,740	0.02 %	117,396	10.17%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9,940	0.01%	350,625	0.01 %	△685	△0.2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50,630	0.04%	2,345,550	0.04 %	5,080	0.22%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20,826	0.02%	1,107,384	0.02 %	113,442	10.24%
204 직무수행경비	20,292,820	0.35%	18,787,093	0.36 %	1,505,727	8.01%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51,800	0.02%	1,134,100	0.02 %	17,700	1.56%
204-02 직급보조비	13,129,500	0.23%	12,254,553	0.23 %	874,947	7.14%
204-03 특정업무경비	6,011,520	0.10%	5,398,440	0.10 %	613,080	11.36%
205 의회비	3,026,374	0.05%	2,842,343	0.05 %	184,031	[illegible]
205-01 의정활동비	774,000	0.01%	774,000	0.01 %	0	0.00%
205-02 월정수당	1,707,847	0.03%	1,677,645	0.03 %	30,202	1.80%
205-03 의원국내여비	140,000	0.00%	140,000	0.00 %	0	0.00%

(단위: 백만원, %)

목그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예산액	3,819,406	4,102,810	4,449,308	5,029,743	5,285,111	5,822,869	8.8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건비		464,735	508,666	563,063	630,381	660,167	697,280	8.45
		12.17	12.40	12.66	12.53	12.49	11.97	
200 물건비		241,449	269,178	307,742	339,149	341,474	372,037	9.03
		6.32	6.56	6.92	6.74	6.46	6.39	
300 경상이전		1,004,821	1,213,140	1,397,183	1,648,023	1,800,274	1,979,041	14.52
		26.31	29.57	31.40	32.77	34.06	33.99	
400 자본지출		1,362,906	1,486,661	1,575,315	1,676,815	1,791,255	2,107,499	9.11
		35.68	36.24	35.41	33.34	33.89	36.19	
500 융자 및 출자		122	16,152	10,152	152	2,209	4,589	106.57
		0.00	0.39	0.23	0.00	0.04	0.08	
600 보전재원		72,593	72,287	19,673	348	277	242	△68.04
		1.90	1.76	0.44	0.01	0.01	0.00	
700 내부거래		617,382	461,803	482,245	640,439	557,013	559,105	△1.96
		16.16	11.26	10.84	12.73	10.54	9.60	
800 예비비 및 기타		55,398	74,924	93,934	94,436	132,442	103,076	13.22
		1.45	1.83	2.11	1.88	2.51	1.77	

대상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기준, 총계
자료출처: 각 년도 예산서

(단위: 백만원)

Ⅱ. 지방정부의 예산운영 관리체계 및 예산과정

1. 지방예산운영 관리체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를 개최(응모·유치 포함)할 경우, 그리고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해당 지방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동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예산운영 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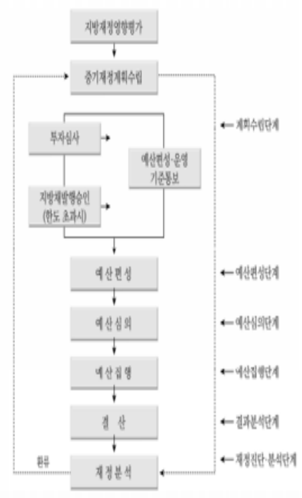

□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이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한 후 그것을 기초로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2020~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예시)

1. 재정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합 계	6,896,815	7,138,941	7,372,386	7,491,559	7,657,400	36,557,100	100,0	2,6
일 반 회 계	5,111,823	5,254,265	5,471,635	5,642,559	5,782,986	27,263,267	74,6	3,1
특 별 회 계	853,069	959,808	965,663	901,556	906,363	4,586,459	12,5	1,5
기 금	931,923	924,868	935,088	947,444	968,051	4,707,374	12,9	1,0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일반 + 특별 + 기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계	6896815	7138941	7,372,386	7,491,559	7,657,399	36,557,101	100	2.6
일반공공행정	955,073	1007720	1,032,844	1,082,717	1,067,307	5,141,466	14.1	2.8
공공질서및안전	296,017	332,779	333,066	299,004	299,279	1,560,545	4.3	0.3
교 육	113,755	133,610	130,473	141,706	127,470	660,011	1.8	1.8
문화 및 관광	410,921	371,067	360,652	364,033	377,522	1,892,995	5.2	-2.0
환 경 보 호	719,616	863,222	914,060	922,333	893,107	4,312,338	11.8	5.5
사 회 복 지	1,133,332	1,299,803	1,356,173	1,407,074	1,471,117	6,843,179	18.7	5.4
보 건	82,454	75,515	74,654	80,033	91,245	403,380	1.1	2.6
농림해양수산	823,390	881,424	884,005	922,856	907,008	4,418,683	12.1	4.1
산업·중소기업	442,107	400,090	310,655	204,401	204,924	1,770,265	4.8	-17.5
수송 및 교통	500,723	515,922	549,107	660,652	761,340	2,988,309	8.2	11.1
국토및지역개발	477,042	541,710	445,427	454,532	456,265	2,385,579	6.5	-1.1
과 학 기 술	1,464	1,459	1,482	1,472	1,522	7,418	0	2
예 비 비	40,000	40,000	40,000	40,000	50,000	210,000	0.6	5.7
기 타	731,033	703,639	753,026	831,166	838,735	3,862,656	10.8	5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평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법령	보조	이자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간:2020.01~2024.12 / 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규모: 지원대상 656명 / 내용: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국 비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illegible]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illegible]		N	N	N	N	N	N	계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자 체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시 도 비	9,965	0	9,965	1,877	1,933	1,991	2,051	2,113	0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2020.01~2024.12 / 규모: 2,000명 / [illegible]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13,847	0	13,847	2,514	2,589	2,667	2,747	2,880	0
									국 비	13,847	0	13,847	2,514	2,589	2,667	2,747	2,880	0
									[illegible]	13,847	0	13,847	2,514	2,589	2,667	2,747	2,880	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기간:2020.01~2024.12 / [illegible]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5,043	0	5,043	989	988	1,008	1,028	1,049	0
									국 비	5,043	0	5,043	989	988	1,008	1,028	1,049	0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illegible]	5,043	0	5,043	989	988	1,008	1,028	1,049	0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 지원										9,629	0	9,629	1,783	1,820	1,898	1,973	2,057	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9,629	0	9,629	1,783	1,820	1,898	1,973	2,057	0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기간:2020~2024년 / [illegible]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9,629	0	9,629	1,783	1,820	1,898	1,973	2,057	0
									국 비	9,629	0	9,629	1,783	1,820	1,898	1,973	2,057	0
									[illegible]	400	0	400	80	80	80	80	80	0
									시 도 비	9,129	0	9,129	1,703	1,740	1,816	1,893	1,977	0
일자리지원사업										49,983	0	49,983	9,104	9,519	9,830	10,251	10,595	0

□ 투자심사제도

○ 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분석하는 제도임.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기준

구분	심사기관	사업대상별 사업비 기준
자체심사	시·군·구	•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의 사업 •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시·도	•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의 사업 •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의뢰심사	시·도	• 시·군·구의 사업비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투자사업 • 시·군·구의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시·군·구의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중앙정부	• 시·도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 등 재정리

엉터리 '타당성 조사' 없앤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입력 : 2014.11.25

지자체 대형 투자사업 때 정부 지정 기관서 받아야

용인 경전철은 하루 1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지난 4월 개통 후 이용객은 하루 9000명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기다 보니 의뢰자의 뜻에 맞춰 수요가 부풀려진 것이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경전철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이 제한돼 투자 전 검증이 강화된다.

투자심사 대상에 자체 사업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 등이 추가된다.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2.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 예산의 주기

회계연도	2020년(n-1)	2021년(n)년도)	2022년(n+1)
2020년도 예산	집행	결산	-
2021년도 예산	편성·심의	집행	결산
2022년도 예산	-	편성·심의	집행

□ 예산편성절차

주요과정	내용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대규모 신규공모사업, 국내·국제 경기 • 법령개정에 의한 지방재정 영향 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의 기본자료 활용 •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실시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기준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	• 예산편성기준: 7월 31일(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내시: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내시: 10월 15일
⇩	
예산안 편성 (지방자치법 제127조) • 시·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 시·군·구: 회계연도 개시 45일전	• 예산담당부서 예산편성운영기준 통보 • 각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12) (지방재정법 제39조) • 예산담당부서 예산요구서 심사·조정 • 집행기관의 장 예산안 결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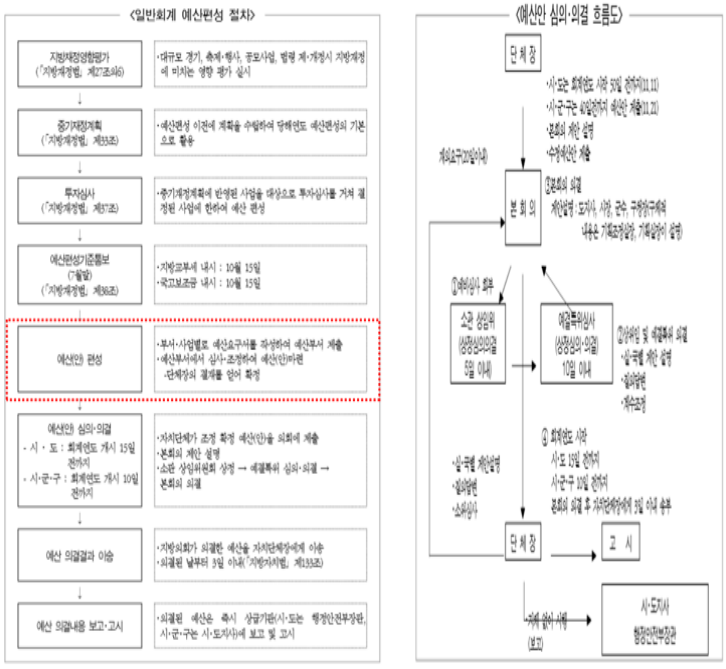

□ 결산의 절차

○ 결산은 예산과정의 최종 단계로 1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예정적 계수의 예산과 확정적 계수의 결산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하는 이유는 세입의 경우 세입 추정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 세출의 경우 예산의 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불용액 등으로 인해 예산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결산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짐. 또한 결산은 예산 집행을 통해 나타난 각종 사업이나 정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정보를 산출하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

○ 결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류(feedback) 기능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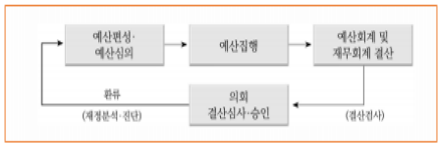

Memo

Memo

발표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의 지원 현황 및 과제

윤 상 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년 제5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워크숍

성인지 예산 결산 심의 지원 현황 및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심의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 상 은

도 의회의 성인지 예산 심사

-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2013년도 성인지 관련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성인지 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미 편성 관련 검토

○ 성인지 예산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필수사업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 권장사업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 상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에 대한 편성 현황을 보면,

· '09 ~' 11년까지 실시된 용역보곳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76개부서 123개 추진과제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17개부서 24개 추진과제에 그치고 있으며,

· 성인지 예산서 상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현황은 59개 부서 99개 추진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성인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 편성 부서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신규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업 지원이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미 편성 현황 】

대상사업	대상과제		전부작성		전부 미작성	
	부서수	과제수	부서수	과제수	부서수	과제수
계	76	123	17	24	59	99
도 청	33	58	6	10	27	48
직속기관. 사업소	14	20	1	1	13	19
제 주 시	14	22	5	7	9	15
서 귀 포 시	15	23	5	6	10	17

2013년도 예산안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소관 성인지

- 복지안전위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9개 사업에 295억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584억원의 50.5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여성정책추진사업은 39개사업에 5,123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8개사업에 23,872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은 3개사업에 457백만원임

검토의견

○ 형식적이고 불충실한 성별 수혜 분석

-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성별수혜분석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및 예산현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나
- 성별 수혜분석은 근거제시가 불충분하고, 일부사업에서는 선정인원 조차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분석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성별 수혜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에 따른 대안 및 향후 성과목표가 제대로 제시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불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관련 통계 미제시 및 미흡

-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통계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결여로 성별 영향 분석 무의미 초래.

2013년 복지위 검토보고서

○ 대다수 사업에서 성별수혜 현황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충분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의 구분조차 불분명 하고 미기재 된 사항이 많아 분석조차 어려움.

○ 따라서 성별 수혜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에 따른 대안 및 향후 성과목표가 제대로 제시될 수 없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적 측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6년이후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이 배제 되고 있음

2017년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토보고서 사례를 중심으로

《 2017년 예결위 검토의견 》

○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전년도 대비 21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억 6천8백만원(134.5%) 증가한 1,470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개사업(189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9개(1,119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2개사업(1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 도입 초기 단계에 비하면 성과목표는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 다만,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인 경우 성과지표는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시 성평등 교육실시】로 설정 하고 있으나, 2016년 추정치 및 2017년 목표치 미작성

- 제주시 건설과 소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유지관리율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율에 100%로 설정

○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2020년도 예결위 검토보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는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2020년 예산안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348,5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성평등 문화 확산: 232,0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119,300천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1,128,100천원

성인지 결산

2013년 결산

'13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총 15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716억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 은 87.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음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1개(집행률 90.3%),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88개(집행률 92.8%),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집행률 74.0%)임

'13년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총 155개** 사업이며, 이중 **119개 사업을 달성하여 76.8%**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36개사업**의 성과목표가 미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결산 결과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 행자위
- 성인지예산 지표에 성평등 예산 관점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대중교통 지표 등 다수 존재하여 질적 성장보다는 규모만 확대한 양상을 보임.
- 양 행정시의 성인지예산 지표 또한 형식적임.
- 성인지예산 본 취지에 걸맞는 지표설정 등 내실화에 충실

예결위 검토보고서

- 금번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사업은 총 155개사업중 119개 사업 달성, 미달성사업은 36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와 함께 예산 집행률이 90%미만인 사업(6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

2019. 6. 19.

▣ 시정요구 43건
- 제주도 본청 21건(공통2)
- 제주시 10건
- 서귀포시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관련사업명	성인지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 - 9】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및 성인지예·결산 제도에 맞도록 사업 추진			
지적사항	○ 성인지예·결산제도가 10여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에 성인지 결산서가 있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할수 있도록 업무 조정하여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결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예산규모도 성과계획서는 2조가 넘는데 성인지예산은 사업수가 244개이지만 2천억 정도임. 총예산 6조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적어 향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과 성과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주의	예산담당관, 회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 성인지예결산제도 담당부서에 대한 조정과 소속 변경에 대하여 검토 조정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에 맞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대상부서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조치상황)
예산담당관 회계과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에 맞도록사업추진	주의	**[관련사업명]** 성인지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 **[지적사항]** ○ 성인지예, 결산제도가 10여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에 성인지 결산서가 있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하여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결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예산규모도 성과계획서는 2조가 넘는데 성인지예산은 사업수가 244개이지만 2천억 정도임. 총예산 6조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적어 향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과 성과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행안부)'에 따라 작성하고 있음. * 기준에 성인지결산서의 분철관련 규정 없으나, 편의성등고려하여분철·관리 ○ 성인지예산제 추진체계 일원화 - 예산담당관 총괄 관리 → 성인지 목표 설정 및 대상사업 선정, 통계 및 효과분석 등 부서간 중첩 업무를 예산담당관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 기획조정실장 주재 사무조정회의- '19.5.1 / 6.28 ○ 기금 성인지 사업 분리 - 일반 및 특별회계와 통합 관리되던 성인지 기금 사업을 별도분리하여관리 * 제도운영은 통합관리, 예산서 및 결산서 분리작성 ○ 전문기관 컨설팅 및 조례시행 전 '성인지예산 TF팀을 구성하여 성인지예산사업 확대발굴 ○ 20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하여 8~9월 중 관련 교육및전문가컨설팅시행

조치대상부서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조치상황)
			〔**시정요구사항**〕 ○ 성인지예결산제도 담당부서에 대한 조정과 소속 변경에 대하여 검토 조정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에 맞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일원화 ○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성인지 예·결산제도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신설) - 성인지 예산작성 실무교육 확대 ○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목표 및 편성방향, 과제선정 등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시행: 2020회계년도 부터

성인지 예산결산 과제

- 도 집행부 과제
  1. 전문성 및 다양성 결여
  ex) 1개국(보건복지여성국)에 의존도(50%이상) 높음
  ex)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 참여 사업에 치중
- 의회의 과제
  1. 정책적 이슈 부족
- 개선방안에 대한 의지
  1.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대의견으로 개선의지 미흡
  2. 2020년 이후 시정요구서에 따라 확고한 개선 의지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